



학교폭력 예방교육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학교전담경찰관 임진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친구야! 너는 아니?



임실경찰서

오늘은 “친구야, 너는 아니?”라는 주제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주로 어떤 일을 할까요?

→학교전담경찰관은 어떤 일을 할까요?

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에 도입, 전국 학교에 배
치하여 학교폭력예방·신고사건
처리,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및 청소년 선도·보호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경찰관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학교폭력 예방 및 홍보활동

학교·학생 및 학교폭력 정보 파악

117 신고사건 처리

수사팀 연계, 교육, 면담 등 맞춤형 조치

폭력서클 현황 파악, 해체, 선도



학교전담
경찰관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참석

가해학생 선도, 피해학생 보호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전문기관 연계

가출팜 해체, 아웃리치, 지원안내등

내 마음이 들리니?



여러분은 학교 폭력 피해자에 대해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피해자가 학교에 얼마나 오기 싫었을지, 괴롭히는 친구들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
팠을지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친구들에게 "친구야, 너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한테도 이야기 하지 못했니?" 라고
이야기하면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 주변사람들이
저때문에
힘들어지는게
싫어요



“저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어지잖아요.”라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기 때문에 힘들어 할까봐
많은 피해학생들은 혼자서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대구의 한 중학생은 학교폭력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학교폭력이 한 아이의 인생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렇게 학교폭력으로 아이의 생명을 잃게 된 부모님들은...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학교폭력이 피해학생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행복, 미래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기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이 배치되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국가가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겠다!

절대 학교폭력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과연,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그렇다면, 그때의 그 가해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해자들은 징역형을 선고 받고 소년교도소에 갓습니다.

경찰이 되고 싶은 친구도 있고, 축구선수, 연예인,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
예요.



잘못했어요..TT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여러분을 평생 따라다니며 꿈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할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의 인생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생?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는 끔찍한 범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라도 절대!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학교폭력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학교폭력의 정의**
- 학교폭력의 유형**
- 학교에서의 조치**
- 형사처벌 절차(소년보호처분)**
- 대처방법**
- 신고방법**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학교폭력의 정의, 유형을 알아보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학교에서의 조치 및 형사 처분 절차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바로 학교폭력이라고 합니다.

신체폭력

감금 / 상해·폭행
약취 / 유인



친구를 때리거나 발로 차고 친구의 몸에 상처를 낸다면 **폭행·상해**가 됩니다.
특히 친구를 일정한 장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감금**에 해당하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언어폭력을 수반한 사이버 폭력입니다.

SNS에 저격글을 올리는 등 친구를 욕하는 행위는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있습니다



애들아! 우리반에 돈 없어진거
000 때문이래. 도둑x



어쩐지...



재수없어 ㅋㅋㅋ



앞으로 000주변엔 얼씬도 하지마
너희들 돈도 다 없어진다..ㅋㅋ

애들아 제발 그만해...
나 너무 힘들어

전송

허위의 사실을 올리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친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폭력



진짜 엄청난 범죄가 화장실에서 발생했네요. 바로 **성범죄!**

폭행·협박을 통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친구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

또는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친구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바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



장난으로 친구 몸 좀 만지고, 장난으로 친구의 몸 좀 짚어서

카카오톡, 페이스북에 올려버리고,

장난으로 친구한테 야동 보내고, 야한 말 하고

그렇게 장난으로 한 행동이 평생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게 된답니다. 같은 남자끼리 여자끼리라고 해서 성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모두 아시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범죄자 알림e는 판결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공개, 지역별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등 제공 (이름, 얼굴사진, 키, 몸무게, 주소 공개)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친구들, 체육복, 문제집 빌려가 놓고 안주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무거운 마가 따리는 친구들 이런 모든 행동들은 **금품 갈취**에 해당하니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이 대표적인 강요에 해당하겠죠?

특히 최근에 중학교에서 대신맨 게임이 유행한다고 들었어요.

"야 나대신 재 때려, 나대신 숙제 해" 이런 행위들은 모두 친구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제로 시키는 것!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마지막으로 집단적으로 한 친구를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놀리고, 면박주고, 골탕 먹이고,

다른 친구들끼리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도 따돌림으로 취급됩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실 입니다.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학교에서는 사안 조사를 거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부모님까지 학폭위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학폭위가 열려서 가해 사실이 드러난다면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보복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특별교육, 학급교체, 전학, 퇴학과 같이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가 내

려질 수 있습니다.

-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②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③ 학교에서의 봉사
- ④ 사회봉사
- ⑤ 출석정지
- ⑥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⑦ 학급교체
- ⑧ 전학
- ⑨ 퇴학처분



여기서 끝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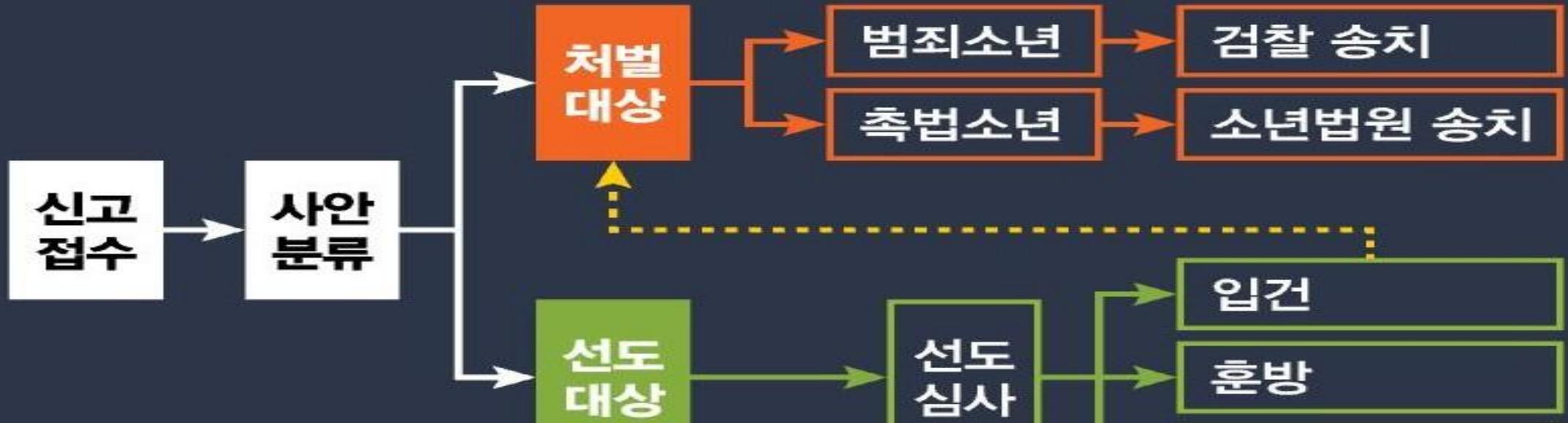
학교에서의 조치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이렇게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서에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안에 따라가해자를 **처벌**할 것인지, **선도**할 것인지를 먼저 구분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서에서는?



처벌대상의 경우 나이에 따라

만10세~만14세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법원**으로 송치,

만14세~만19세미만은 범죄소년에 해당하여 **검찰**로 송치됩니다.

선도대상의 경우 '선도심사위원회' 절차를 통해 한 번 더 **선도**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소년보호처분

- 1호.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 2호. 수감명령
- 3호. 사회봉사명령
- 4호. 단기보호관찰
- 5호. 장기보호관찰

- 6호. 아동복지·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 7호. 병원·요양소·소년의료시설
- 8호. 소년원 송치
- 9호. 단기소년원 송치
- 10호. 장기소년원 송치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되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소년보호처분은 이처럼 1호~10호까지 있습니다.

특별교육을 받거나 **사회봉사**를 가기도 하고,

24시간 보호관찰관이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되는 **보호관찰** 처분이 있고,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절대 맞서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가해학생에게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나' 자신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상황이 계속될 것 같다면 우선 그 자리를 피하세요.



경찰관님!
사실은 친구가
저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말고 빨리 부모님, 학교 선생님,
학교전담경찰관 등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등하교
방법을 바꾸고,
되도록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 명에게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
한 후에도

학교폭력 해결의 키맨 (keyman = 중심인물)



**폭력상황에 처한
친구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을 해결하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학교폭력을 목격하게 되는 여러분들입니다.

모르는 척 방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준다면!



주먹을 이기는 손가락, 학교폭력을 이기는 손가락,
바로 **117**을 누르는 여러분의 손입니다.

학교폭력 목격 시 방관하지 말고 친구를 위해 **117chat 앱**을 설치하고 신고해주세요.

국번 없이 117에 전화하거나 #0117로 문자를 보내 신고해 주셔도 됩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마치며



오늘 학교폭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어땠나요?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까지도 망가트린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꿈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을 꼭 지켜주세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마치며



학교폭력으로부터 서로 서로를 지켜줌으로써저마다 간직한 소중한 꿈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을 빛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